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



2017년 강북구 재정공시
〈예산기준 재정현황〉



|| ●●●● 목 차 ●●●● ||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
2-1. 세입예산, 2-2. 세출예산, 2-3. 중기지방재정계획	
2-4.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6
3-1. 재정자립도(당초), 3-1-1. 재정자립도(최종)	
3-2. 재정자주도(당초), 3-2-1. 재정자주도(최종)	
3-3. 통합재정수지(당초), 3-3-1 통합재정수지(최종)	
4. 재정운용계획	10
4-1. 성인지 예산현황,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4-3. 성과계획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4-6.~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	

2017년 강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강북구 재정공시 제1호(2017. 2.28)

강북구청장(인)

- ◆ 우리구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40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432억원 보다 1,02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6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1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930억원입니다.
- ◆ 우리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¹⁾재정자립도'는 25.44%(18.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²⁾재정자주도'는 53.79%(47.13%)입니다.
- ◆ 우리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3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 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면에서 낮은 편이며, 최근 5년 간 세입 증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등 재정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증대에 직결되는 인구 수, 기업체 수, 부동산가격 및 산업발달의 기반(예)관광산업) 요소들이 우리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단기간에 호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정준영(02-901-6135)
rsw2001@gangbuk.go.kr

1) 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기준으로 측정된 값입니다.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408	4,861	547	6,432	6,083	349
	세출예산	5,408	4,861	547	6,432	6,083	349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5.44 (18.78)	22.77 (19.12)	2.67 (△0.34)	36.20 (30.09)	36.73 (32.93)	△0.53 (△2.8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3.79 (47.53)	50.81 (47.15)	2.98 (0.38)	56.59 (50.47)	55.37 (51.57)	1.22 (△1.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3	△62	145	△14	3	△17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강북구 : 구-(1)]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4), 50만 미만 시·군(4), 자치구(4))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는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제외수입에서 제외된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기준으로 측정된 값입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강북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0,875	468,787	0	10,838	61,25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64,967	401,345	443,821	486,129	540,8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9,154	100.00	356,109	100.00	399,708	100.00	437,508	100.00	468,787	100.00
지방세	49,429	15.49	49,690	13.95	50,753	12.70	53,680	12.27	56,849	12.13
세외수입	34,174	10.71	23,125	6.49	23,438	5.86	29,952	6.85	31,177	6.65
지방교부세	3,819	1.20	4,441	1.25	4,358	1.09	4,592	1.05	5,792	1.24
조정교부금 등	92,281	28.91	97,565	27.40	106,042	26.53	118,080	26.99	127,137	27.12
보조금	139,450	43.69	168,289	47.26	202,117	50.57	215,205	49.19	216,603	46.21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13,000	3.65	13,000	3.25	16,000	3.66	31,228	6.6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강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0,875	468,787	0	10,838	61,25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64,967	401,345	448,821	486,129	540,8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9,154	100.00	356,109	100.00	399,708	100.00	437,508	100.00	468,787	100.00
일반공공행정	20,643	6.47	22,361	6.28	23,049	5.77	27,828	6.36	42,094	8.98
공공질서 및 안전	1,184	0.37	1,175	0.33	1,482	0.37	1,886	0.43	2,907	0.62
교육	4,625	1.45	4,836	1.36	5,442	1.36	5,421	1.24	5,901	1.26
문화 및 관광	7,672	2.40	7,415	2.08	7,412	1.85	8,381	1.92	8,746	1.87
환경 보호	12,383	3.88	13,096	3.68	14,911	3.73	22,943	5.24	25,099	5.35
사회복지	159,668	50.03	192,023	53.92	229,210	57.34	246,208	56.28	249,571	53.24
보건	9,131	2.86	9,589	2.69	10,889	2.72	12,568	2.87	12,590	2.69
농림해양수산	174	0.05	123	0.03	99	0.02	137	0.03	166	0.04
산업·중소기업	5,889	1.85	3,321	0.93	646	0.16	503	0.12	1,080	0.23
수송 및 교통	2,718	0.85	3,092	0.87	3,895	0.97	5,271	1.20	6,098	1.30
국토 및 지역개발	981	0.31	970	0.27	1,021	0.26	1,233	0.28	1,501	0.3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192	1.00	3,561	1.00	3,997	1.00	4,375	1.00	5,140	1.10
기타	90,894	28.48	94,547	26.55	97,656	24.43	100,754	23.03	107,893	23.0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55,102	570,796	592,987	593,735	598,014	2,910,634	1.90
자 체 수 입	96,011	97,167	98,168	99,424	100,859	491,629	1.20
이 전 수 입	388,914	407,418	429,050	424,650	423,865	2,073,897	2.2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177	66,211	65,769	69,661	73,290	345,108	1.10
세 출	555,102	570,796	592,987	593,735	598,014	2,910,634	1.90
경 상 지 출	155,464	157,960	161,786	167,237	176,280	818,727	3.20
사 업 수 요	399,638	412,836	431,201	426,498	421,734	2,091,907	1.4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행정정보>재정운영 현황>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년 계획)을 참고해주세요.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502,100	558,015	55,916	11.13
강북구	486,129	540,875	54,746	11.26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15,621	16,574	954	6.11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350	350	0	0
강북문화재단	0	216	216	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2개): 강북문화재단,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 ☞ 강북문화재단 및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예산은 출연금에 한함.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angbukcmc.seoul.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예산현황을 참고해주세요.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강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44%(18.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5.44 (18.78)	468,787	119,254 (88,026)	349,533	0	(31,228)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강북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4.33%(20.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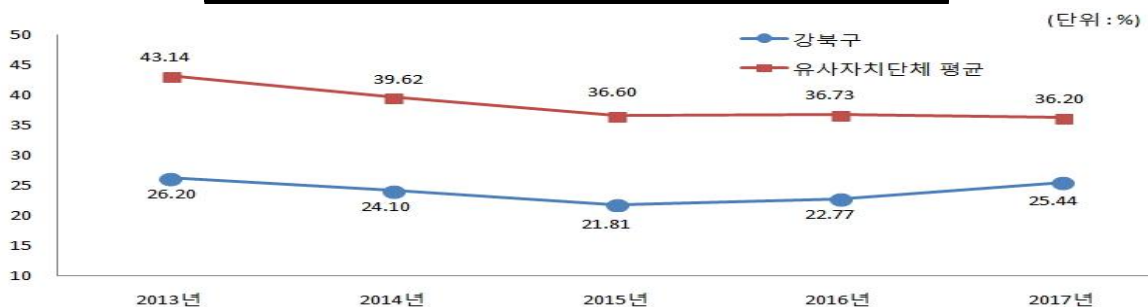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33 (20.12)	495,284	120,503 (99,632)	374,781	0	(20,871)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6.20	24.10 (20.45)	21.81 (18.56)	22.77 (19.12)	25.44 (18.78)
최종예산	24.60	24.07 (18.22)	22.72 (16.16)	24.33 (16.8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재원의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세 수입증대에 직결되는 요소들이 우리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단기간 호전되기 어려워 재정자립도가 낮은편임.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강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79%(47.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3.79 (47.13)	468,787	252,184 (220,956)	216,603	0	(31,228)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강북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3%(48.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3.00 (48.78)	495,284	262,495 (241,624)	232,789		(20,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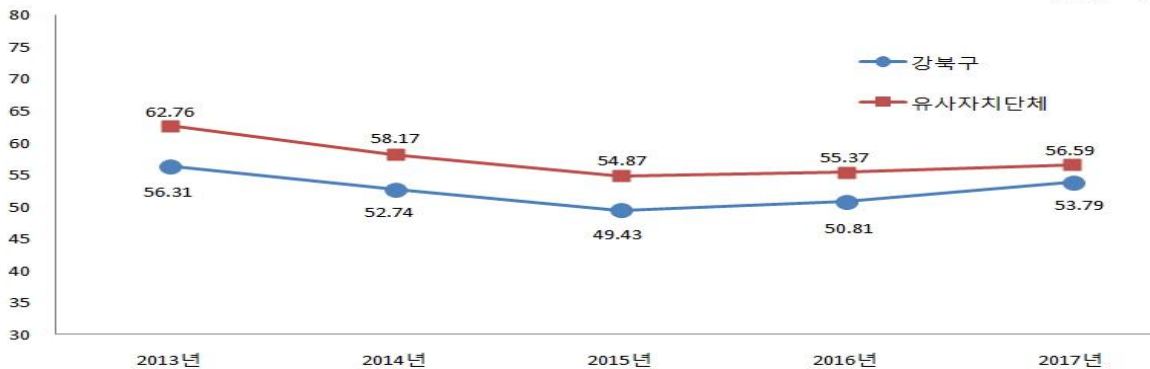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6.31	52.74 (49.09)	49.43 (46.18)	50.81 (47.15)	53.79 (47.13)
최종예산	54.24	53.99 (48.14)	51.98 (45.42)	53.00 (48.5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세입은 취약하고 국고보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강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7,872	472,919	2,118	3,984	1,866	35,183	474,785	△26,912	8,270
일반회계	437,559	452,260	0	0	0	31,228	452,260	△14,701	16,527
기타 특별회계	6,843	9,819	40	1,019	979	3,955	10,798	△3,955	0
기 금	3,470	10,840	2,078	2,965	887	0	11,727	△8,257	△8,25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7,094	△23,425	△24,396	△26,083	△26,912
통합재정수지 2	△3,462	△6,768	△7,497	△6,179	8,270

☞ 전년대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에서 흑자전환, 기금 또한 적자폭 감소. 하지만 기금 등의 경우 설치목적에 따라 조성 및 지출결과로 인해 (-)로 나타남.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강북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9,874	507,581	2,050	4,023	1,972	38,813	509,553	△39,679	△866
일반회계	458,412	481,795	0	0	0	33,455	481,795	△23,383	10,073
기타 특별회계	8,519	12,818	79	1,076	997	5,357	13,814	△5,296	61
기 금	2,943	12,968	1,971	2,947	976	0	13,944	△11,001	△11,001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46,101	△23,564	△30,885	△36,297	△39,679
통합재정수지 2	△22,586	△4,348	△6,871	△5,545	△866

☞ 당초대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에서 적자폭 감소,
하지만 기금 등의 경우 설치목적에 따라 조성 및 지출결과로 인해 (-)로 나타남.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북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5	15,010
여성정책추진사업	21	8,19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	3,86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2,946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행정정보>재정운영현황>예산현황 자료실(2017년 성인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세요.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모델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68,787	300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액			300	
1	문화체육과	불안한 도서관 승강기 바꿔주세요	50	신규 사업
2	푸른도시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15	신규 사업
3	문화체육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생활체육교실 바닥 및 거울 교체해주세요	10	신규 사업
4	푸른도시과	북한산 지하수 약수터 조성사업	20	신규 사업
5	교통행정과	우리 학교에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70	신규 사업
6	안전치수과	우이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95	신규 사업
7	건강증진과	이튼스쿨(이가튼튼한학교) 프로그램 운영	40	신규 사업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행정정보>재정운영현황>주민참여예산>알림마당을 참조해 주세요.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북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7	170	166	479,625	447,822	31,803
감사담당관	1	4	4	4	183	174	9
홍보담당관	1	1	3	3	1,049	1,174	△126
행정관리국	1	17	43	44	132,611	111,202	21,409
기획재정국	1	14	33	21	17,226	15,833	1,393
생활복지국	1	14	29	27	273,305	269,253	4,052
도시관리국	1	9	15	22	5,823	5,088	735
건설안전교통국	1	7	22	21	25,230	21,887	3,343
보건소	1	10	19	22	21,073	20,110	963
의회사무국	1	1	2	2	3,126	3,101	25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행정정보>재정운영현황>예산현황자료실(2017년 성과계획서)을 참조해 주세요.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44 (18.78)	53.79 (47.13)	53.24	18.28	55.18	91.35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8	78	0
	부단체장	56	5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40	957	△68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8	8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3	103	0
	의원국외여비	46	46	0
지방보조금		5,153	3,863	△1,29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564	1,564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171	3,171	0
공무원 일·숙직비		189	189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http://lofin.moi.go.kr>),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행정정보>재정운영현황>예산현황자료실(2017년 사업예산서)을 참조해 주세요.
- ☞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에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가증가율(7%) 증액편성액 포함 지방의회의원(강북구 의회 14명) 국외여비 기준액에는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한 국가 공식행사, 자매결연행사 참가비 포함.
일·숙직비 기준액은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한 금액 포함.

4-6~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강북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0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특별교부세 사업 중복 신청 및 교부	700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